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군산 세경아파트] 신청 안내문

- 공급 위치 : 전북자치도 군산시 양안로 123, (조촌동, 세경아파트)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1층 ~ 지상15층, 1개동 153세대[총20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특별공급 규모 및 내역 : 일반분양 45세대, 특별공급 108세대 중 기관추천 15세대
- 공급대상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모델	세대별 계약면적(m ²)					공급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 차장포함)	계약면적	대지 지분	특별공급세대수					일반 공급	
			주거 전용	주거 공용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신혼 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국민 주택	59.86	01	59.86	14.4152	74.2752	9.7942 (9.5982)	84.0694	32.5279	15	15	35	5	38	45	2026년 12월예정

구 분		59.86m ²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4
	중소기업 근로자	4
	장애인	3
소 계		15

※ 상기내역은 분양승인 시 군산시청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구 분	내 용
대 상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하고 매월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동과 • 장애인 : 전북특별자치도청 장애인자립지원 업무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전북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통사항

구분	내용	
공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I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1순위자 -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1순위자 	

■ 일정

모집공고	특별공급신청일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026년 06월 예정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모집공고 참조 확인방법 -청약홈(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자: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장 소: 당사 서울사무실(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99 세경빌딩 8층)

※ 상기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절차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음

■ 서울사무소 :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99 세경빌딩 8층

(문의 : 02-446-2740)